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

(Version 3.0_2025.10.01)

솔브레인은 본 규범을 준수합니다.

솔브레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수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은 구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서 제정한 기준인 RBA8.0을 바탕으로 6개의 영역[A(노동), B(안전보건), C(환경), D(윤리), E(관리시스템), F(공급망 관리)]에서 상기 규범 준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은 솔브레인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솔브레인과 협력사의 모든 국내외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근로자가 존중 받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솔브레인과 협력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원부자재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각 협력사 사업장에서는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록 및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 및 근로자들은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브레인은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은 법규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UN 비즈니스 및 인권 지도 원칙,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 협약, UN Global Compact의 10개 원칙과 같은 국제 표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규범과 지역 법규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A. 노동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A1. 비자발적 노동 금지

1) 모든 노동은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 비자발적 노동이란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한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하거나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개인에게 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고용된 행위를 말한다.

2)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3) 고용주와 인력 알선업체 및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문서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또는 압수할 수 없다.

-. 고용주는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상기 문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4) 고용주는 인력 알선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근로자가 상기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A2. 연소 근로자 관리

1) 아동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아동 노동의 나이 제한은 ILO 협약(제 138호)에 따라 만 15세를 최저 연령으로 하며, 만 15세 미만 또는 의무 교육을 마치는 연령 미만 또는 해당 국가의 법정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제 및 교육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 138호)에 의하여 노사 단계와 협의를 거쳐 초기에는 14세를 최저 연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구현해야 하며, 모든 법규에 준수하는

타당한 직장 내 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3) ILO 협약 제 182호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한 건강이나 안전 및 도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음란물 및 음란행위 관련, 불법활동 등) 의 수행을 금지한다.

4) 모든 학생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을 유지하고, 교육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며, 학생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5) 학생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에 대한 급여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6) 아동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A3. 근로 시간

1) 주당 근로시간은 비상 사태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6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매 7일 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주당 정규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업장은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무는 모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A4. 임금과 복리후생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 수당 관련된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 및 자격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

3)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법정 할증 요율로 보상해야 한다.

4)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그 밖에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조, 급여 기간, 임금 및 복리 후생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5. 차별금지/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

1) 고용주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 군인 연금 자격, 유전정보 기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 하거나 괴롭힘은 없어야 한다.

2) 근로자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의 출입 및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해야 한다.

3)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4) 외국인 이주 근로자는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서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 약관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변경과, 기존 약관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 1에서 이동된 항목

5)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폭언 등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이를 이용한 근로자의 위협은 금지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임신 검사를 비롯한 의료 검진 및 신체검사를 금지해야 한다.

6)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A6. 안전 및 보건환경

1)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업장은 이를 조성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2) 근로자에게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해야한다. 또한 작업 시작 전, 새로운 장비 도입 시, 사고 발생 후 등 적절한 시기에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3) 근로자는 화재, 유해물질 누출, 자연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자 노력한다.

4) 근로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5) 근로자는 유해물질 노출,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7.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1) 고용주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권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는 대체 형태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있다.

A8. 제 3의 고용 기관

1) 제 3의 고용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 및 관련법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A9. 근로자 참여

1) 고용주는 임금 및 복리 후생, 근로 환경, 근로자 교육, 안전 및 보건 환경 등에 관련된 피드백을 공유하거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도록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피드백 또는 고충이 접수될 경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조치의 진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B. 안전보건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유해한 근로 조건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1. 산업 안전보건

1) 사업장은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장은 안전보건 위험(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통제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완화해야 한다.

3) 사업장은 작업 현장의 소음과 진동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주기적인 측정과 개선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3) 상기와 같은 위험 요소 및 부정적 영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위험요소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임산부 및 수유부와 그 자녀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수유부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성별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2. 비상사태 대응 방안

1) 천재지변, 사고, 법적 이슈, 감염병 또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 가능한 활동을 수행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를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비상 훈련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

-. (포함 사항)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는 명확한 출구(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 등 비상 사태에 필요한 최소 확보 조건을 포함하도록 한다.

-.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B3. 산업 재해 및 질병

1)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포함 사항)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 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을 포함한다.

2)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산업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주는 상황이 완화되기 전에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한다.

B4. 산업 위생

1) 통제 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 정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2)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3)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 작업장 건강 모니터링 제공

4)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 자료는 작업장 위험 노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B5. 육체노동

1) 육체노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 (위험요소) 수작업 및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해당된다.

B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1)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험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2) 기계 설비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한다.

B7. 위생, 식품 및 주거

1)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 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 직원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 장치, 소지품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개별 보관 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한 출입 통제 장치가 마련된 적절한 크기의 개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B8.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1)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확인된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포함)로 제공해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별 및 연령과 같은 관련 인구통계에 대한 특정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업무 시작 전과 업무 중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 근로자들에게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보복 없이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불이익 금지)

B9. 사고 관리

1) 근로자가 보건 및 안전사고 또는 아차 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제도와 접수 후 조사/추적/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2)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3) 근로자 사고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회복 및 근로자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고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근로 보복이나 불필요한 차별 등의 대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B10. 화학물질 관리

1) 사업장은 제품의 제조, 가공, 포장 등의 공정 작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법정 규제 물질 취급 및 물질 사양을 준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2) 규제 물질의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폐기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안전 라벨 부착, 개인 보호구 제공 및 의무화, 보호시설 확보 및 분리 보관

-. 규제 물질 관리 및 취급,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시행

3) 각 사업장은 화학물질 공정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식별 및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화학물질 취급 및 공정,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요소와 잠재적 긴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5) 각 사업장은 작업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개조, 활용 과정과 제품 및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화재를 감지하고 대처 가능한 설비를 확보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하도록 한다.

C. 환경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제조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수질, 대기, 토양 등) 및 천연자원(생물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C1. 환경 허가 및 보고

1)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2. 오염 방지 및 자원 보존

1) 배출가스,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원천에서 제거하거나, 오염 통제 장비 추가,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2) 생산, 유지 관리, 재료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천연자원(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을 절약해야 한다.

C3. 유해 물질 관리 및 물질 규제

1)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위해 해당 물질을 식별하고, 물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관련 법규 및 고객사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제품의 환경적 영향과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유해물질, 재활용 및 폐기물의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규제: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4) 사업장은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질을 적용하기위해 노력한다.

5) 사업장은 공급망 내에서 해당 제품에 함유된 특정 물질의 취급 경로를 조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이 때 협력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고객 또는 제 3자의 감사 요청에 응하도록 한다.

6) 사업장은 관련 법규 및 규제의 강화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사업장 및 협력사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유해 물질의 사용 및 배출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C4. 고형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적절하게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2) 사업장은 고형 폐기물 취급(재활용/매립/소각 등)과 관련된 모든 국가 및 지역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이는 폐기물의 분류, 보관, 운반, 처리, 처분 등 일련의 전 과정에 해당된다.

3) 비유해 고형 폐기물 관리

-. 발생량 파악 및 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파악하고 그 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서화 한다. 관리하며, 나아가 발생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위해 노력한다.

-. 오염방지 및 자원 절감 노력: 생산 공정 개선, 원료 대체, 자원 보존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실행해야 한다.

4) 유해 고형 폐기물 관리

-. 동식물, 환경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유해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라벨 등을 표기하여 관리한다.

-. 유해 고형폐기물의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사업장 내 유해 물질을 분리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5) 고형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한다.

-.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 또는 재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재활용 적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6)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협력사의 법적 자격을 확인하고, 그들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또한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협력사의 폐기물 처리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확인한다.

7) 폐기물 데이터는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C5. 대기 관리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역의 법률, 규정, 허가 등의 요건을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배출 허용 기준, 모니터링 시기 및 이행, 보고 의무 준수 사항도 포함된다

2)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연무제, 부식제, 미세먼지(또는 분진), 오존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은 배출 이전에 특성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감리하며 통제 및 처리해야 한다.

3) 전사 차원의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온실 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4)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 및 방지시설(집진기, 스크러버 등)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감시~~해야 한다.

5) 대기오염 배출(온실가스 포함)에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훈련하도록 한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 당국 및 이해관계자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6. 물 관리

1) 물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수원과 물 사용 및 방출을 기록하며, 감시하고, 물 보존 방법을 모색하며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2)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적절한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여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제 및 처리해야 한다.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유해물질, 기타 오염물질이 하천 또는 해양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활동을 지양한다. 또한 멸종 위기 생물 및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4)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폐수 처리 및 억제 시스템의 성능을 규칙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C7. 에너지 소비 및 배출

1) 임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량 관리, 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에너지 감축 및 배출량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2)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에너지 사용량과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기타 간접 배출(SCOPE3)에서 발생한 에너지 관련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요구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모든 범위 (SCOPE1, SCOPE2, SCOPE3)를 추적, 문서화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시 해야 한다.

3)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동시에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을 검토한다.

5)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재생에너지 사용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사용을 검토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C8. 토양 관리

1) 유해 물질이 토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 저장, 폐기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출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절차도 마련하도록 한다.

2)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토양 오염을 막도록 하며, 유해 폐기물은 지정된 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산업 단지 내에 시설을 조성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고, 토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D. 윤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D1. 준법 경영

1) 사업 활동을 행하는 모든 지역의 관련 법규, 규제, 국제 협약 등을 준수한다.

2)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고, 담합, 가격 조작, 시장 분할 등의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며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3) 임직원은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원칙, 행동규범 전파, 윤리경영 서약서 체결 등을 통해 윤리적 행동을 기반으로 경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5) 협력사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윤리 및 준법 경영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2. 사업 청렴성 및 부당이익 금지

1)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한다.

3)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기타 수단을 수락해서는 안된다. 또한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나 관련 부패 방지 협약을 포함해 사업 운영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부패 방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포함사항)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행위

4) 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5) 부패 위험이 높거나, 반부패 이행 이력이 불투명한 협력사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D3.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1)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자격을 갖춘 모든 협력사는 (신규) 협력사 등록 및 선정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다. 등록 및 선정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따르며, 선정 결과에 대해 협력사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유한다.

3) 모든 거래는 상호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된다. 거래 조건 및 단가 협의, 계약 체결 등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행위의 거래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D4. 정보 공개

1)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2)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 성과, 재무 상태 등 공개 가능한 기업 정보는 사실대로 공개하도록 한다.

3) 노동,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위조 또는 허위 조작 없이 공개해야 한다.

4)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납되지 않는다.

D5. 지적 재산권 보호

1) 타인 및 기업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존중되어야 하며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를 사용하거나 이전할 경우,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2) 기업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한다.

3)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보호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4) 공급망 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다.

D6.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

1)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한 업무상 취득한 회사 및 고객 관련 정보는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내부 정보의 보호, 무단 변경 및 누설 방지 등을 보안하기 위한 조치는 수용하도록 한다.

3)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이외에도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D7.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1)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을 한 공급업체 및 근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2)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한다.

E. 관리 시스템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위험의 파악 및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1. 기업의 준수 의지

1)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2) 경영진이 승인한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정책 선언문이 작성되어야 하며,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 확인 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정책 선언문은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E2. 거버넌스 및 책임 조직

1)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서 및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하며, 고위 경영진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된 내용을 승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3) 공급망 ESG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E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1) 본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E4. 교육

1)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E5. 커뮤니케이션

1) 정책, 관행, 기대 사항 및 성과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세스 또는 절차와 임직원, 협력사 및 고객, 이해관계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 프로세스 또는 절차는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운영 관행 및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 협력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한다

-. 예시: 협력사 간담회,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 등

3) 또한 직원,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나 우려사항, 고충 등을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보장 채널도 구축한다. 이 때, 제보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필요시 이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E6. 감사 및 평가

1)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7. 문서화 및 기록

1)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F. 공급망 관리

솔브레인 협력사는 솔브레인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정책 및 규범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하위 공급망에 전파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F1. 기업약속

1)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는 서약을 해야 한다.

2)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게 전달하고, 모든 협력사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또한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3) 협력사가 제공한 공급망 정보는 ESG 관리를 위한 정보 활용 이외에는 어떠한 사용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4) 또한 협력사는 제공하는 모든 공급망 정보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함을 약속한다.

F2. 원재료 제한

1) 제품의 구성 요소 및 성분, 포장 등의 항목은 고객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채굴, 가공, 운송 등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강제 노동, 무장세력 침임 등의 문제와 환경 문제, 금융 및 경제적 문제 등 ESG 관리 항목 상의 어떠한 위험요소를 포함하지않도록 한다.

3) 제품에 대해 사양, 진술 및 적합성 인증서가 정확해야 하며, 품질 수준은 기록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F3. 책임 있는 광물 조달

1) 협력사 및 하위 공급망은 솔브레인에서 요구하는 책임/분쟁광물 정책을 준수한다.

2) 기업이 조달하는 책임광물/분쟁광물은 투명한 출처 및 공급망 임을 보장하고, 정확한 출처 검증 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한다.

3) 책임광물/분쟁광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실사 프레임워크)에 따르며, 정책의 채택과 점검, 실사 등을 통하여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조달되지 않은 광물 임을 보장해야 한다.

-. 분쟁광물: 3TG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 책임광물: 코발트, 운모, 아연, 알루미늄, 구리, 리튬, 니켈, 마그네슘, 천연흑연

-. 기타 RMI에서 지정한 분쟁광물, 책임광물 외에 EU 배터리 규제 상의 광물 포함

3) 광물 조달 공급망 내에 위험 요소가 식별될 경우, 해당 위험 요소를 완화 및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F4.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1)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급망 방침/규범(강령)을 수립해야 한다.

2) 협력사 및 하위 공급망은 솔브레인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모든 공급망에 대해 위험 요소가 식별하고, 해당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해 개선 및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한다.

F5. 공급망 실사(DUE DILLIGENCE)

1)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포함하여 법적 준수,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 등 구체적인 리스크를 판별할 수 있는 조직(이하 담당자)를 구성한다.

2) 해당 담당자는 각 항목의 리스크를 구분하고, 이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 확인 방식: 서면평가 (자체 설문지, RBA와 같은 산업 표준 자가 진단표, 제 3자기관 평가 도구), 현장실사/감사(AUDIT) 등

3) 확인된 정보는 내·외부 평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 및 위험도를 평가한다.

-. 고려 사항: 협력사의 산업군, 생산지, 원재료 수급지, 생산 공정 등을 고려한 ESG 리스크 항목,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위험 단계를 분류 기준 등

4) 확인된 정보가 리스크 및 위험의 단계에 따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물리적 통제 수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ESG 위반 사실을 인지된 경우, 실사, 감사, 내부 고발 등의 채널을 통해 위반된 사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취합하여 관련부서 및 최고 경영진에 즉시 보고한다.

-. 위반 사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와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한다.

-. 분석된 원인을 토대로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CAP: Corrective Action Plan)을 수립한다.

5) 시정 조치 계획에 대해 책임 주체(내부 부서 또는 협력사)와 충분히 협의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개선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위험성 완화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술 및 정보 공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ESG 성과 달성을 독려한다.

6) 개선 조치 이행 현행은 추적가능하도록 문서화 또는 별도의 기록을 확보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7) 개선 조치 완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및 협력사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관리 시스템 및 정책을 개선하도록 한다.

F6. 성과 측정 및 목표 달성

1) 효과적인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을 위한 목표와 성과 지표(KPI)를 설정한다

2) 설정된 KPI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과 계획을 수립한다.

-. 사회적, 환경적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밝힌 문서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 달성에 대해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3)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 공급망 ESG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솔브레인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솔브레인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본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솔브레인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솔브레인과 거래하는 협력사로서 본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솔브레인이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2. 솔브레인 또는 솔브레인이 지정한 자가 당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설문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솔브레인의 요청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는 솔브레인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솔브레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하청업체 또는 공급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솔브레인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급계약과 본 행동규범 간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행동규범이 우선합니다.

5.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와 기록을 솔브레인이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본 행동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솔브레인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솔브레인 귀중